##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61

발의연월일: 2024. 7. 10.

발 의 자: 박성훈·김기현·조은희

백종헌 • 고동진 • 임이자

박충권 · 김대식 · 이헌승

김위상 · 이상휘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,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문제로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자 교육 및 교육 참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 임(안 제28조의3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3(보호자에 대한 교육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1.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
- 2.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필요한 교육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・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 마련, 교육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&lt;신 설&gt;</u>	개 정 안   제28조의3(보호자에 대한 교육)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 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.  1.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으로 하는 교육
	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 호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행 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

<u>다.</u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 마련, 교육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